

[전기공사업 신규등록 서류]

- ①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
 - 타 시설공사업 면허가 있을 경우 반드시 표시하고 등록증 사본 첨부
 -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
 -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에 한함). 목적사항 확인(전기공사업)
 - ④ 신청인 인적사항 기재표
 - ※ 등록기준지(본적)는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확인후 작성
 - 법인 : 등기상에 기재된 모든 임원(감사 포함) / 개인 : 대표자
 - ⑤ 기업진단보고서(기업진단보고서는 개인 또는 천공되어야함)
 -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1.5억 이상
 - 진단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인회계사 등 진단자의 등록증 사본 1부
(공인회계사 등 진단자가 진단기관의 대표자가 아닌 경우 체직증명서 1부)
 - 기업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동안의 예금평균잔액증명원 및 증빙자료 1부
 - ⑥ 보증가능금액확인서
 - 전기공사공제조합에 37,500,000원 이상 예치,출처,담보후 발급
 - ⑦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
 -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이상
 -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 자격자
 - 입사일 : 기재하지 않음
 - 등록번호 :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발급번호, 등록연월일 : 전기공사경력수첩 등록일
 - ⑧ 보유현황 대상기술자의 "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"
 - ⑨ 전기공사경력수첩 사본
 - 국가기술자격자의 경우 3page 자격사항 부분도 복사하여 제출
 - ⑩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
 - 전대일 경우 : 소유자와 전대자 계약서, 전대자와 임대차 계약서, 전대동의서
 - 자기소유 건물일 경우 제외
 - ⑪ 사무실 건축물관리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
 -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경우
 - 집합건축물일 경우 소유 호수를 선택하여 출력
 - ⑫ 사무실 약도, 평면도, 사진
 - 평면도 : 건축물관리대장에 나오는 면적을 작성, 그중 전체가 아닌 일부를 사용할 경우 실제 사용부분을 따로 표시
 - 사진 : 건물 전체가 나오는 사진 1장
출입구 사진(상호가 확인되어야 함) 1장
내부 사진 1장
- ※ 모든 서류의 날짜는 신청일, 신청인은 회사상호, 도장은 회사도장이여야 함.
(사용인감계, 인감증명서는 필요없음)
- ※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확인
- ※ 모든 서류는 접수일 현재 30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,
기업진단 보고서의 진단기준일도 접수일 현재 30일 이내여야 함.
- ※ 신규등록수입증지 40,000원